

교환·분할·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

교환·분할·합병사업시행 지구에 포함된 시·군·구 관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36조에 따라 별첨 교환·분할·합병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협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행자: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협의자: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